

FSS/2112-04 : 매출채권 과대계상

- 쟁점 분야 : 매출채권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인식과 측정)
- 결정일 : 2011년
- 회계결산일 : 2011.1.~2011.06.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11년 6월말에 부도어음 10억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당시 동 부도어음 관련 거래처가 모두 폐업된 상태이거나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등 부도어음의 회수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었다.

부실화된 동 매출채권에 대하여 개별분석을 통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함에도, 회사는 일반 정상채권에 적용되는 설정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거래처의 폐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부도어음 10억원에 대하여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했어야 함에도, 정상채권에 적용되는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계상함으로써 매출채권을 10억원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인식과 측정)에 문단58~63에서는 금융자산에 대해 원금상환의 불이행 등 손상사건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금융감독원은 거래처의 폐업 등으로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없이 정상채권에 적용되는 대손충당금 설정률을 적용한 것은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시사점

부도어음 등 비정상 채권 등은 정상채권들과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대손충당금을 적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